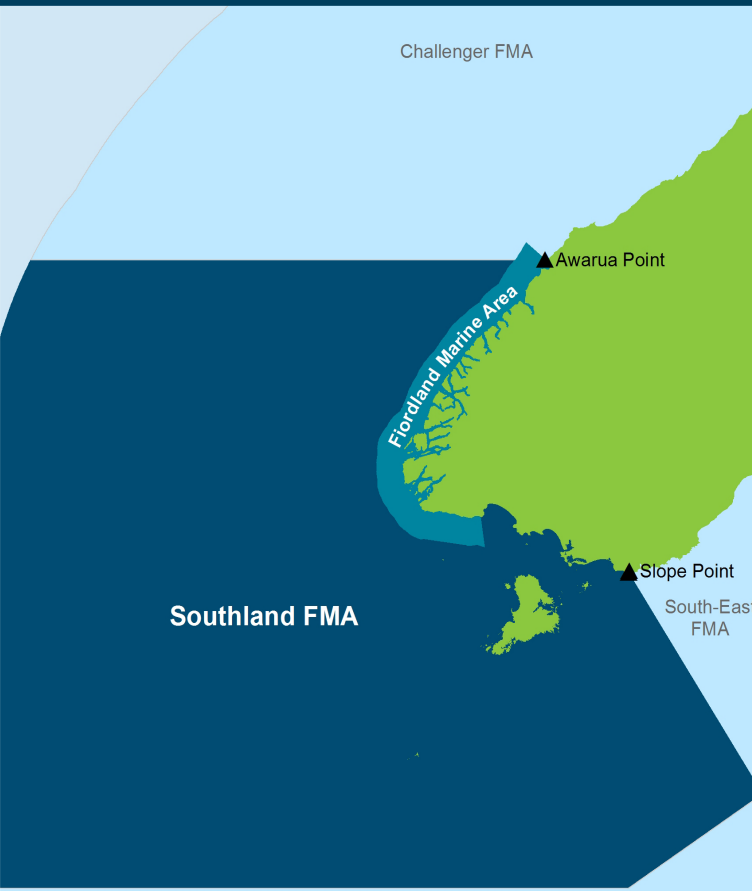
사우스랜드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

시행일: 2016년 9월,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휴대폰으로 규정을 확인해 볼까요?

무료 문자 서비스 이용

무료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세요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anatū Ahu Matua

사우스랜드 수자원 관리 수역

사우스랜드 수자원 관리 수역(FMA)은 사우스 웨스트랜드의 아와루아 포인트에서 남섬 남동 해안에 자리잡은 캐틀린스의 슬로프 포인트까지 남쪽과 서쪽의 모든 해역을 포괄하며 포보 해협, 스튜어트 아일랜드, 모든 인근 도서와 200 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가장자리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팸플릿은 사우스랜드 FMA의 주된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에 대한 요약 안내서입니다. 피오르드랜드 해양구는 사우스랜드 FMA 내의 별도 구역으로, 추가적인 제한 조치와 약간 변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오르드랜드 규정 팸플릿을 읽어보십시오.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이 중요한 이유

어패류 포획 채취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옥외활동의 하나인 까닭에 매년 일반인과 전문 어업인들이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다량의 어패류를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1차산업부(MPI)는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을 수립합니다. 우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이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게 포획 채취를 함으로써 수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합시다.

규정에서 다루는 내용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의 주요 내용:

- 잡아갈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기 위한 어패류별 1일 수량 한도
- 잡아갈 수 있는 최소 크기를 제한하는 법정 크기 한도
- 일부 어패류에 대한 어구 제한 및 잡이 방식 금지
- 취약한 일부 패류의 채취 금지 시즌
- 일부 어패류의 포획 채취를 금지하는 폐쇄 구역

유의사항

- 1일 한도 규정은 실제로 나서서 물고기나 닭새우, 패류를 잡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잡아서 먹은 모든 어패류는 1일 한도 계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 특정 구역에서만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저기 분산해 포획 채취를 하십시오.
- 1일 한도를 초과해 잡았거나 크기 미달인 어패류,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상태의 어패류는 설혹 죽었다 하더라도 즉시 그 장소에서 방류해야 합니다.
- 잡은 어패류를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규정을 위배하면 즉석 범칙금, 기소, 벌금, 재산 압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안내

이 팸플릿은 어패류 포획 채취 법규의 요약 안내서입니다.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패류 포획 채취 제한 조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1차산업부 사무소의 수산 감독관에게 문의하십시오.

규정 확인 방법

MPI는 무료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무료 문자 서비스, 무료 스마트폰 앱, MPI 웹사이트 **www.mpi.govt.nz**를 이용하거나 직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팸플릿의 뒤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물고기

1일 수량 한도 및 크기 제한

아래에 나오는 어종을 모두 합쳐 **혼합 한도로 개인당 1일 최대 30 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각 어종의 개별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지역별 제한이나 구역 폐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폐쇄 구역 및 제한 구역' 난을 확인하십시오.

어종	개인당 1일 수량 한도	최소 허용 길이(cm)	최소 그물코 크기 (mm)
바라쿠타(Barracouta)	30	–	100
청대구(Blue cod)	20	33	100
블루 모키(Blue moki)	15	40	114
블루노즈(Bluenose)	5	–	160
청새리상어(Blue shark)	1	–	100
무태상어(Bronze shark)	1	–	100
버터피시/그린본(Butterfish/ Greenbone)	15	35	108
장어	6	–	12
엘레펀트 피시(Elephant fish)	5	–	150
납작치(가자미 제외)	30	25	100
– 가자미(Sand flounder): 납작치 30 마리 한도에 포함	–	23	
동갈치(Garfish/Piper)	–	–	25
숭어(Grey mullet)	30	–	90
그로퍼/하푸쿠/배스 (Groper/Hapuku/Bass) – 30 마리 한도에 포함 안 됨	5	–	160
귀상어(Hammerhead shark)	1	–	100
청어(노란눈숭어)	–	–	25
카하와이(Kahawai)	15	–	90
부시리(Kingfish) – 30 마리 한도에 포함 안 됨	3	75	100
칠성장어(Lamprey)	30	–	–
홍메기(Ling)	30	–	100
청상아리(Mako shark)	1	–	100
마블 피시(Marblefish)	30	–	100
청새치(Marlin)	1	–	100
정어리(Pilchard)	–	–	25
악상어(Porbeagle shark)	1	–	100
왕연어 (Quinnat salmon)	2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어종	개인당 1일 수량 한도	최소 허용 길이(cm)	최소 그물코 크기 (mm)
홍대구(Red cod)	10	25	100
레드 거나드(Red gurnard)	30	25	100
레드 모키(Red moki)	15	40	115
레몬피시(Rig)	5	–	150
참상아리(School shark)	5	–	150
꼬리기름상어(Seven gilled shark)	1	–	100
홍어/가오리(Skate Ray)	5	–	100
도미(Snapper)	30	25	125
곱상어(Spiny dogfish)	15	–	100
큰얼룩통구멍(Stargazer)	30	–	100
타라키히(Tarakihi)	15	25	100
환도상어(Thresher shark)	1	–	100
트레발리(Trevally)	30	25	100
트럼피터(Trumpeter)	15	35	100
와레호우(Warehou)	15	–	100
양놀래기(Wrasse)	30	–	100
기타	–	–	100

그로퍼/하푸쿠/배스 및 부시리

위에 나오는 물고기 1일 혼합 한도 이외에도 별도의 그로퍼/하푸쿠/배스/부시리의 1일 혼합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3 마리의 부시리를 포함해 총 5 마리입니다. 부시리의 최소 허용 크기는 75cm입니다.

물고기 길이 재기

코 끝에서 꼬리지느러미가 갈라진 'V' 부분까지를 잽니다.



백상아리 보호

보호종인 백상아리를 잡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고기 포획 제한

왕연어(Quinnat salmon) 포획 제한

민물낚시 & 조류사냥 위원회(Fish and Game Council)의 관할이 아닌 연안 바다에서 왕연어 낚시를 할 경우:

- 낚싯줄을 연결한 낚싯대를 하나만 소지해야 합니다.
- 낚싯대로부터 15m 거리 이내에 있으면서 낚싯대를 쳐다보고 있지 않는 한, 낚싯줄을 연결한 낚싯대로 왕연어 낚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차청어(Sprat)나 기타 미끼용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낚싯대를 하나 더 사용해도 되지만 혹시 여기에 연어가 물리면 즉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주낙 방식(Line fishing) 제한

주낙(Long line)과 선주낙(Dahn/Drop line)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대낚기나 손낚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낙 방식이 허용되는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주낙줄은 1 줄을 초과해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 합니다(대낚기/손낚기 줄 제외).
- 25개를 초과하는 낚싯바늘이 달린 주낙줄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 합니다.
- 2인 또는 그 이상이 배에서 주낙줄(대낚기/손낚기 줄 제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2 줄(대낚기/손낚기 줄 제외)을 사용, 선상 설치, 소지할 수 있습니다.
- 주낙줄에 다는 부표에는 주인 이름 첫 글자와 성을 또렷하게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게 해두어야 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도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물 제한

일반적 그물 제한

고정그물(Set net), 자루그물(Fyke net), 끌그물(Drag net)을 포함한 모든 그물이 해당됩니다. 그물이 허용되는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언제라도 1개를 초과해 끌그물이나 고정그물, 자루그물, 기타 다른 그물을 치거나 소지하지 못 합니다(뜰채그물 제외).
- 그물은 손으로만 끌어당겨야 합니다.
- 밀물, 썰물 때를 막론하고 강, 개울, 수로, 후미, 사운드의 수면 폭을 1/4 이상 가로질러 그물 1개나 여러 개를 연결해 쳐서는 안 됩니다.
- 미끼로 유인하는 그물을 치거나 사용하지 못 합니다(자루그물 제외).
- 그물에 뻗침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자루그물 제외).
- 장어잡이용 자루그물이나 덫그물의 최소 그물코 크기는 12mm입니다.
- 자루그물에는 주인 이름 첫 글자와 성을 또렷하게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게 해둔 부표 하나를 달아 놓아야 합니다.

끌그물(Drag net)

끌그물이 허용되는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길이가 4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날줄의 총 길이가 20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끌그물의 최소 그물코 크기는 100mm입니다.

고정그물 제한

사우스랜드 수자원 관리 수역에서는 헥터 돌핀을 보호하기 위한 고정그물 금지 조치가 실시 중입니다. **('폐쇄 구역 및 제한 구역' 난 참조)**

고정그물이 허용되는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고정그물의 길이가 6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그물로부터 60m 이내에 쳐서는 안 됩니다.
- 고정그물의 양쪽 끝에는 주인 이름 첫 글자와 성을 또렷하게 표시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게 해둔 부표를 하나씩 달아야 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도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선상에서 고정그물은 하나만 두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끼 잡이용으로 추가 그물을 사용 가능한데 길이가 10m 미만이고 그물코 크기가 최대 50mm여야 함)
- 썰물 때 물고기가 바다로 돌아가는 길을 막는 방식으로 그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고정그물을 사용해 민물 게임 어종(송어, 연어 포함)을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패류

1일 수량 한도 및 크기 제한

패류는 봉지나 그 비슷한 용기에 담아 패류가 바다로 되돌아갈 수 없게 해둔 상태라면 잡은 것입니다. 채취 도중의 어느 시점에라도 1일 수량 한도를 초과해 소지하지 못 합니다.

지역별 제한이나 구역 폐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폐쇄 구역 및 제한 구역' 난 확인).

사우스랜드 FMA의 패류 채취 및 소지 한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종류	개인당 1일 수량 한도	최소 허용 크기(mm)
새조개(Cockle)	150	제한 없음
키나(성게)	50	제한 없음
홍합*	25	제한 없음
굴 – 드레지 굴(Dredge) †	50	58
전복 – 일반종 – 황전복(Yellow foot)	10 10	125 80
피피(Pipi)	150	제한 없음
가리비 †	50	90
토헤로아(Toheroa)#	금지	금지
투아투아(Tuatua)	150	제한 없음
기타(혼합) •	50	제한 없음

* 홍합 한도가 50개인 스튜어트 아일랜드 제외

\# 토헤로아 조개는 현지 마오리 부족 측의 승인이 없는 한, 채취 또는 소지하거나 그 서식지를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잠수부가 굴과 가리비를 채취할 때 선상에서 잠수부 안전을 지원하는 인원의 몫으로 본인 외 최대 2명에 대한 한도를 추가 채취할 수 있는 제한적 규정이 있습니다.

주: 이것은 굴이나 가리비를 채취할 때만 적용됩니다.

• 이것은 각 채취 종류를 모두 더한 혼합 한도입니다. 위 표에 특정되지 않은 모든 종류에 적용되며 게, 삿갓조개, 캐스 아이 고둥, 쿡스 터번, 불가사리, 다슬기, 소라, 민물 가재(코우라)등이 포함됩니다.

패류는 크기를 잴 수 있는 상태로 건져 올려야 합니다

최소 크기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패류(전복, 가리비, 드레지 굴 등)는 껍질 채 건져 올려야 하며 평균 최고 수위점 아래에서 탈각할 수 없습니다. 패류를 소지하고 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드레지 굴과 가리비는 채취 후 선상에서 바로 먹기 위해 탈각해도 됩니다.

먹은 가리비와 드레지 굴은 1일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먹지 않은 가리비와 드레지 굴은 껍질 채 육지에 가져와야 합니다.

전복 누적 한도

1일 한도만큼 계속 전복을 채취해서 1인이 어느 한 시점에 소지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 20개, 또는
- 탈각 후 중량 2.5kg
- 이 소지 한도는 자택을 포함한 모든 곳의 수량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패류 크기 재기

전복: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을 직선으로 잽니다. 껍질 등쪽을 따라 곡선으로 재지 마십시오.

가리비: 껍질의 가장 긴 지름을 잽니다.

드레지 굴: 58 mm 구경의 원형 금속 고리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패류 채취 제한

스쿠버 장비(UBA)

- UBA를 사용해 전복을 잡지 못 합니다. 스노클링 장비는 사용해도 됩니다.
- UBA를 소지한 상태에서 전복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배와 차량 안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취 시즌

- **가리비:** 사우스랜드 FMA에서 10월 1일 ~ 3월 15일
- **드레지 굴:** 채취 시즌은 3월 1일 ~ 8월 31일입니다.

주: 바위굴이나 참굴은 사우스랜드 FMA에서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스랜드 FMA에서 채취하는 모든 굴은 채취 시즌, 1일 한도, 크기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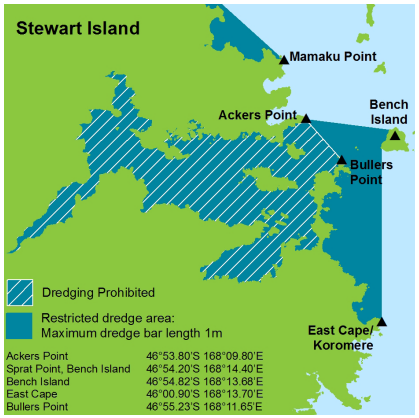
굴 형망 크기 제한

포보 해협 드레지 굴 해역에는 굴 형망 어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3개 구역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나옵니다. 일반인은 이곳에서 굴을 채취할 수 있지만 금속틀 막대의 길이가 1m를 초과하지 않는 형망의 사용이나 소지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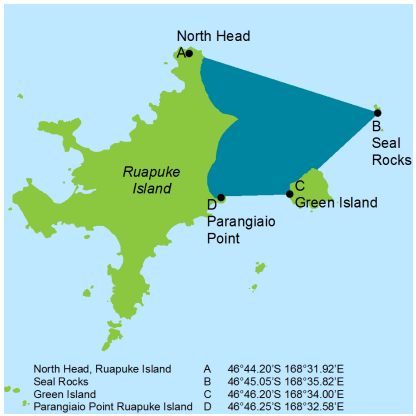
- 스튜어트 아일랜드의 새들 포인트, 가든 포인트, 마마쿠 포인트를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스튜어트 아일랜드 북동 해안 바다
- 스튜어트 아일랜드 애커스 포인트, 벤치 아일랜드에 이어 다시 남쪽으로 스튜어트 아일랜드 이스트 케이프를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패터슨 인렛(테화카아 테웨라) 어귀 외곽 해역
- 루아푸케 아일랜드 노스 헤드, 실 록스, 그린 아일랜드, 루아푸케 아일랜드 파랑이아이오 포인트를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루아푸케 아일랜드 북동 해안 바다 (다음 구역도 1 ~ 3 참조)



구역도 1: 스튜어트 아일랜드 북동 해안 형망 구역



구역도 2: 패터슨 인렛 어귀 외곽, 벤치 아일랜드 형망 구역



구역도 3: 루아푸케 아일랜드 북동 형망 구역

산호 보호

흑산호나 홍산호를 가져가거나 소지하지 못 합니다.

닭새우(Rock Lobster)

1일 수량 한도

하루에 6 마리(가시 닭새우와 팩호스 닭새우 혼합)를 초과해 닭새우를 잡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소 허용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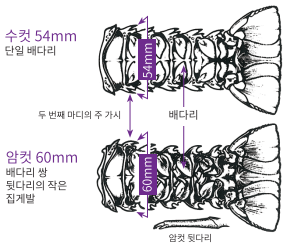
잡거나 소지하지 못 하는 닭새우:

- 복부 너비가 54mm 미만인 가시 닭새우 수컷
- 복부 너비가 60mm 미만인 가시 닭새우 암컷
- 복부 길이가 216mm보다 짧은 팩호스 닭새우(암수 공통)

가시 닭새우(Spiny rock lobster) 크기 재기

복부 두 번째 마디의 양쪽에 있는 큰 가시 끝단 사이의 너비를 직선으로 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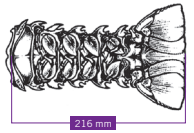
암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60mm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팩호스 닭새우(Packhorse lobster) 크기 재기

복부 첫 마디에 있는 석회 바 뒤에서 중간 꼬리 끝까지 직선으로 복부 아래쪽 길이를 잽니다.

복부 길이는 암수 구분 없이 최소한 216mm 여야 합니다.



닭새우 포획 제한

보호 대상인 닭새우

다음과 같은 닭새우는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므로 즉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 크기 미달 닭새우
- 체외 알을 품고 있는(복부 아래쪽 배다리 사이에 품음) 암컷 닭새우
- 부드러운 껍질 단계인 닭새우(외골격이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은 탈피 후 상태)
- 크기를 잴 수 없는 닭새우(예: 복부 손상으로 정확히 잴 수 없을 때)

일반적 제한

닭새우를 잡아도 되는 구역에서 다음 행위는 불법입니다.

- 체외 알을 품는 부속지나 그 체외 알을 닭새우에게서 제거하는 행위
- 평균 최고 수위점 아래에서 크기 측정 불능 상태로 닭새우를 소지하거나 배에서 그런 상태의 닭새우를 부려놓는 행위
- 작살을 사용하거나 껍질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닭새우를 잡거나 몸통이 관통된 닭새우를 소지하는 행위
- 스프링이 장착된 고리나 올가미를 사용하는 행위. 손으로 조작하는 고리나 올가미만 사용해야 합니다

- 미끼로 유인하는 그물을 부설 또는 사용해 닭새우를 잡거나 그런 그물로 잡은 닭새우를 소지하는 행위

통발

통발이 허용되는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1인당 하루에 최대 3개까지 통발을 사용, 설치, 소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통발과 부표에는 주인 이름 첫 글자와 성을 또렷하게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게 해두어야 합니다.
- 2인 또는 그 이상이 배를 탄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6개까지 통발을 사용, 설치,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단 통발에 이름을 표시하고 1인당 3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닭새우를 잡는 데 미끼망이나 링 통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름 표시나 통발 개수 제한 같은 기타 모든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닭새우를 잡는 통발에는 탈출구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아래 '탈출구 요건' 난 참조).
- 용도별로 특수 통발(대구 통발, 게 통발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발에는 탈출구를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되지만 이름 표시나 통발 개수 제한 같은 기타 모든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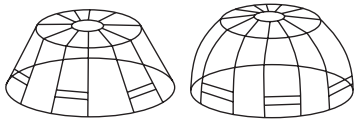
닭새우 통발

닭새우 통발은 미끼를 쓰든 쓰지 않든 닭새우를 포획하거나 포획 후 임시로 보관하는 기능을 가진 여하한 통 형태의 용기를 의미하며 닭새우를 포획, 임시 보관 또는 저장하게 제작된 기타 모든 기구를 포함합니다(고리, 미끼망, 링 통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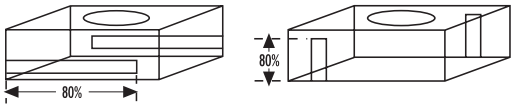
탈출구 요건

모든 닭새우 통발은 탈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크기 미달의 닭새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구멍입니다.

- 통발 윗면이나 바닥면에 탈출구를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 탈출구는 내부 치수가 적어도 54mm x 200mm여야 합니다.
- **둥글거나 벌집 모양의 통발:** 통발 아가리 이외에 적어도 3개의 탈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 **사각형 통발:** 통발 아가리 이외에 서로 마주 보는 위치로 적어도 2개의 탈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탈출구는 해당 통발 면 높이나 길이의 80%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 **망 통발:** 오직 최소 내부 치수가 54 mm x 140mm인 비개조 점 용접식 망으로만 만든 통발은 별도의 탈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주보는 양면의 어느 쪽에서든 면 넓이의 80% 이상이 막히지 않는 한, 뚜껑이나 덮개로 망 통발을 가려놓을 수 있습니다.

폐쇄 구역 및 제한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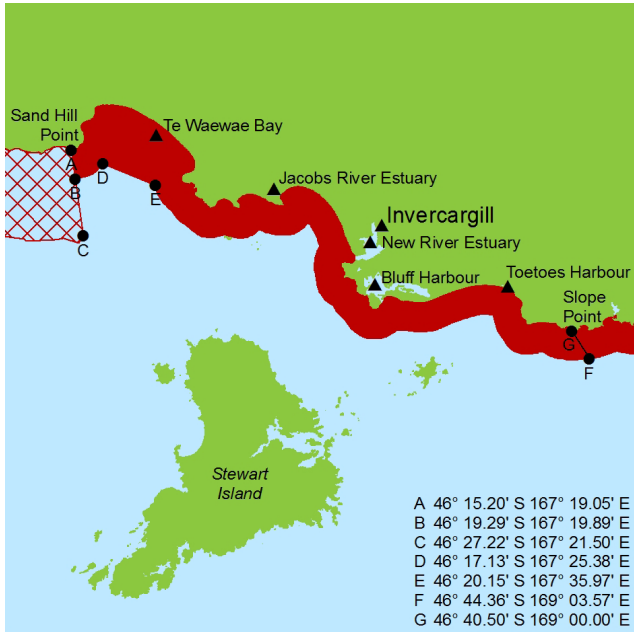
폐쇄 구역은 특정 어패류의 포획 채취 행위가 금지되는 곳입니다. 제한 구역은 특정한 포획 채취 방식(예: 고정그물)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수량 한도가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구역입니다.

고정그물 금지 구역

핼데인의 슬로프 포인트로부터 피오르드랜드 동쪽의 샌드힐 포인트까지는 그 4 해리 앞 바다에서 고정그물을 사용하지 못 합니다. 또 가든 베이 서쪽의 올드 맨 록과 샌드힐 포인트 사이의 전체 테와에와에 베이에서도 고정그물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구역도 4 참조)

주: 이 금지 구역은 슬로프 포인트를 지나 사우스-이스트 수자원 관리 수역 안쪽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샌드힐 포인트 서쪽으로 피오르드랜드 해양구 안에서도 일반인의 고정그물 사용이 금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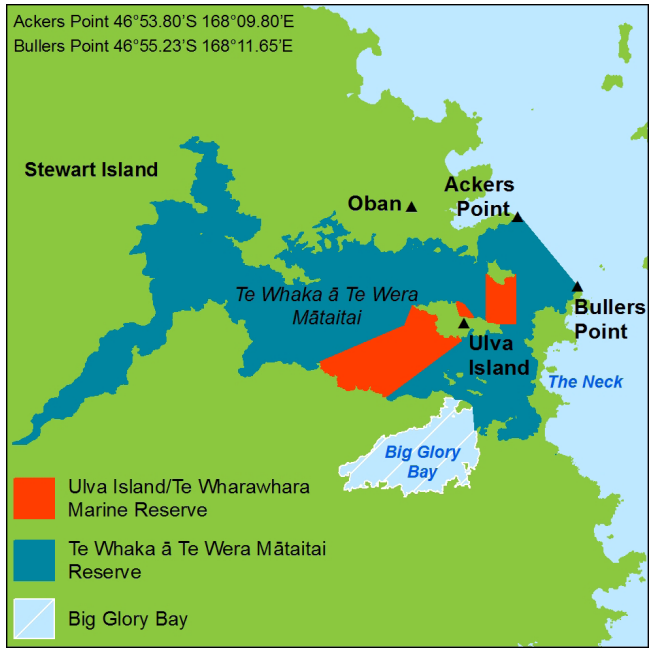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항만이나 하구, 강, 인렛, 석호에는 고정그물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정그물을 사용해 게임 어종(송어나 연어)을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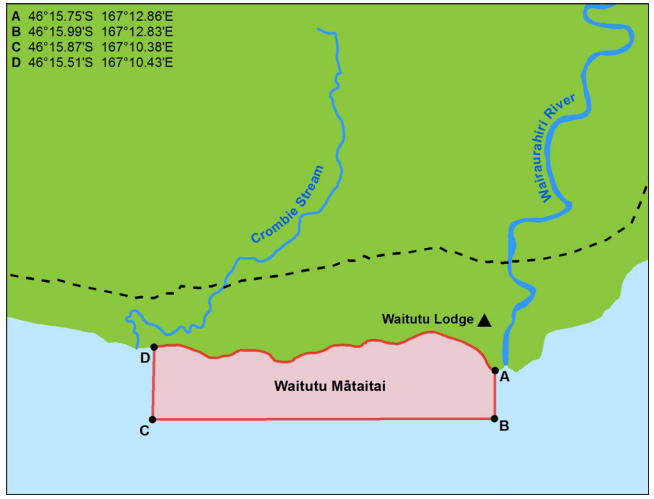
구역도 4: 슬로프 포인트에서 샌드힐 포인트까지 고정그물 금지 구역

테화카아 테웨라/패터슨 인렛 마타이타이 보호구

테화카아 테웨라/패터슨 인렛 마타이타이 보호구에서는 구역 폐쇄, 금지, 1일 한도 축소 등 별도의 포획 채취 조례가 추가 적용됩니다. 패터슨 인렛의 울바 아일랜드/테화라화라 해양보호구에서는 어떤 포획 채취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MPI에 문의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테화카아 테웨라/패터슨 인렛 마타이타이 보호구 안내 팸플릿을 요청하십시오.



구역도 5: 테화카아 테웨라/패터슨 인렛 마타이타이 보호구



구역도 6: 와이투투 마타이타이 보호구 전복 채취 금지 구역

와이투투 마타이타이 보호구 – 전복 채취 금지

사우스 피오르드랜드의 와이투투 마타이타이 보호구에서 일반종 전복과 황전복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마타이타이 보호구는 와이라우라히리 강 어귀 서쪽 기슭에서 크롬비 스트림 어귀 동쪽 기슭까지의 평균 최고 수위점을 기준으로 450m(0.24 해리) 바다 앞까지 약 2.08 제곱킬로미터를 포괄합니다.

피오르드랜드 해양구

구역 폐쇄 및 1일 한도 축소 등 피오르드랜드 해양구만의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MPI에 문의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피오르드랜드 해양구 안내 팸플릿을 요청하십시오. 피오르드랜드 해양구에는 환경보존부에서 관리하는 해양보호구가 10 군데 있습니다. 모든 해양생물이 완전히 보호받고 모든 어패류 포획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곳입니다. 해양보호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보존부에 문의하십시오.



구역도 7: 피오르드랜드 해양구와 해양보호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포획 채취

올바른 방식으로 어패류 취급

불필요하게 걸려들었거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잡았을 때 올바르게 다뤄 방류하면(이를테면 방류할 때 손이나 장갑에 물을 묻혀) 이것들이 죽지 않고 바다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충분한 크기로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으로나 MPI 사무소에 들러 '어류 취급 안내서'(Fish Handling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바닷새 보호

바닷새는 미끼와 물고기 조각을 잘 포착하므로 바늘에 걸리거나 낚싯줄에 엉킬 수 있습니다. 바닷새가 달려들지 않게 하고 이들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www.southernseabirds.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포획 채취 행위 신고

MPI는 우리 주변의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불법 어로 행위, 1일 한도량을 초과하거나 규정 크기에 미달하는 어패류를 포획 채취하는 행위, 또는 잡은 어패류를 판매, 거래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부쳐드립니다.

잡은 어패류를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몰래 포획 채취를 하거나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 또는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 0800 4 POACHER (0800 476 224)로 신고하십시오.

뉴질랜드의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을 간단히 확인

이 안내 팸플릿은 사우스랜드 자원 관리 수역(FMA)에 대한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의 요약 자료입니다. 이것은 안내용일 뿐이며 지역별 모든 제한 조치와 규정, 또는 인쇄일 이후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번 바다로 나갈 때마다 이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 9889번으로 단어 'app'을 문자로 보내거나 QR 코드를 스캔해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의 무료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이 앱은 일단 내려받으면 이동통신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문자** 9889번으로 blue cod(청대구)나 paua(전복) 등과 같이 본인이 잡으려는 어패류 명칭을 보내면 법정 허용 크기와 수량 한도에 관한 정보가 문자로 회신됩니다.
- **www.mpi.govt.nz/fishingrules 방문**



MPI 지역 사무소 문의처

인버카길 사무소 (03) 211 0060	137 Spey Street, Level 1, Invercargill
더니든 사무소 (03) 466 3607	73 Otaki Street, Dunedin

New Zealand Government